

1. 개정이유

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개정에 따라 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 직위 및 위원 명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‘차관보’로 변경
(안 제3조)

나.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을 ‘지방행정국장’으로 명칭 변경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7.~3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”를 “차관보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지방행정정책관”을 “지방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3조(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)	제3조(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동일)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<u>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</u>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차관보로</u> ----- -----.
1. 행정안전부 <u>지방행정정책관</u>	1. 행정안전부 <u>지방행정국장</u>
2. ~ 3.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동일)